'19년도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운영 용역

과 업 지 시 서

2019. 3. 29

소 속 사업본부 패션산업팀

전 화 02-20196-0154

이메일 ohoh0513@seouldesign.or.kr

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
홈페이지 www.seouldesign.or.kr

Seoul Design Foundation

'19년도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

Ⅰ 과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'19년도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운영 용역
나. 사업대상 : 동북권 지역 의류제조업체
다. 사업지역 : 동북권 전역(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중랑구, 광진구)
라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12월 31일까지
마. 센터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08 이안빌딩 9층
바. 사업예산 : 일금십억천팔백육십만원정(1,018,600,000 ※VAT 포함)
사. 입찰방법 : **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**
아. 사업목적 : 의류제조업체에 대한 다각적이고 효율적 지원으로 지역 의류제조산업 활성화 기여
자. 과업범위:

❶ **센터 및 사업 홍보**

□ 동북권패션지원센터 시설(재단실CAD/CAM, 공용 장비실 등) 및 사업공고 홈페이지 홍보 및 광고물 배포

□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지원 사업 관할 지역구별 홍보

- 관할 지역구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홍보
- 의류제조업체 근로자 특성에 맞춘 현장 방문 형 홍보에 집중
- 관할 지역구(강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중랑구, 광진구) 구청 및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지역 신문 및 현수막 홍보

❷ **센터 시설 관리 및 방문 업체 응대**

□ 재단실(CAD/CAM) 이용 업체 응대 및 컨설팅

□ 공용장비실 특수장비 이용 업체 응대 및 컨설팅

□ 지원 프로그램 사업 및 시설 이용 문의 업체 응대

❸ **사업 기획 및 운영**

□ 재단실(CAD/CAM) 및 공용장비실 활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- 특수 장비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

□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지원 사업 진행

- 신청 업체 모집 및 수혜 업체 선정

- 선정 업체 사전 검수 및 사후 검수
-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 지원 비용 정산

□ 의류제조업체 경영 컨설팅 및 특수봉제장비 교육
- 의류제조업체 소그룹 경영 컨설팅 및 현안 이슈관련 특화 교육
- 동북권 지역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의류제조업체 취·창업자 대상 특수봉제장비 실습 교육
- 찾아가는 지식재산 무료교육 사업(패션엔젤)과 연계하여 봉제업체 맞춤 노무·세무·법률·산재예방 교육 진행

□ 지역 의류 제조 산업 활성화 사업 **(사업 아이디어 제안 사항)**
- 의류제조업체 및 업계 위원 참여 간담회 개최
-지역형 의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업 기획
-지역 의류제조산업 상권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사업 기획

❹ <u>대외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</u>

□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(도심권, 서북권, 북부권)와 연계한 센터 홍보 및 사업 연계

□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(도심권, 서북권, 북부권)와 협업하여 사업 결과물 아카이빙

□ 지역 의류제조협동조합 연계하여 사업 진행 및 홍보 지원

□ 지역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센터운영

❺ <u>최종 결과물 완성</u>

□ 센터 시설 이용 결과
- 센터 방문객, 재단실(CAD/CAM) 이용건수 및 수임료, 공용장비실 이용 건수 결과물

□ 센터 사업 운영 결과
- 지역별 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지원 수혜업체 검수보고서
- 교육프로그램 개최 수 및 참여자 수
- 지역 의류제조업체 일감 확대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

□ 센터 사업 홍보 및 사업 운영 결과 아카이빙

Ⅱ 과업내용

가. **홍보·마케팅 및 기타 지원 사업**

- ▫ 사업목적 : 사업 및 센터 홍보 활성화
- ▫ 사업대상 : 불특정 다수 시민
- ▫ 사업내용 :

구분	내용	홍보횟수
오프라인	언론 및 미디어 노출	10회
	지역소식지, 유사센터 홍보요청	6회
온라인	유관기관 (협회 및 센터) 홈페이지, SNS 홍보	14회
합 계		30회

나. **재단실 CAD/CAM 운영**

- ▫ 사업목적 : 자동재단기를 활용한 고품질 재단 제공으로 생산성 강화
- ▫ 사업대상 : 불특정 다수 의류 봉제업체
- ▫ 사업내용 :

구분	내용
운영시간	주 5일 (9:00 ~ 18:00)
운영인력	재단실책임자 1명/ 전문캐드사 1명/ 재단사2명
운영내용	-CAD/CAM 교육 프로그램 도입 -마카/그레이딩 서비스 도입

다. **작업환경개선 및 장비임대지원사업**

- ▫ 사업목적 : 의류제조공장 공장 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근무의욕 고취
- ▫ 사업대상 :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동북권 지역 의류제조업체
- ▫ 사업내용 :

구분	작업환경개선사업	장비임대지원사업
목표	70개사	20개사
지원금액	공사비용의90%지원 (1개 업체 최대 300만원 지원)	장비임대비용의 80% 지원 (1개 업체 최대 120만원 지원)
지원방법	신청기간 내 접수 후 추첨 선정	예산 소진 시까지
지원품목	**[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품목]** -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: 닥트, 흡입기, 이동형 집진기, 환풍기, 청소기, LED, 삼파장등, 조명기구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	본봉사절, 각씽침사절, 삼봉사절, 인터록, 오버록, 니혼오바, 닥고, 단추달이, 바텍, 니혼바리, 칼본봉사절, 날라리, 평쌍침사절, 큐큐, 나나인치, 가이루퍼사절, 지그재그미싱, 재단칼

	[능률적인 작업환경 향상 품목] - 능률적인 작업환경 향상: 순환식 보일러, 바큠다이, 서보모터, 레이스웨이	기계, 스쿠이, 소매달이미싱, 주름잡이미싱, 마루닥고, 오드람프, 호시미싱, 상하송오바록
	[작업환경조성 품목] - 작업환경 조성: 누전차단기, 노후배선정리, 배전함설치, 폐수 회수용 배관, 작업의자, 수납다이, 곤도라	

라. **지역 의류제조산업 활성화 사업(신규)**

- ▫ 사업목적 : 지역형 의류제조업산업 생태계구축과 경쟁력 강화
- ▫ 사업대상 : 동북권 지역 의류제조업체
- ▫ 사업내용(안) :

사업 명	구분	목표	내용
의류제조업체 경영 컨설팅 및 특수봉제장비 교육	의류제조업체 CEO 및 관리자 교육	월 1회 (약10회)	분야별 경영정보, 지식재산권, 제조신기술 개발동향, 작업환경 관리기술 등
	취업/창업희망자 경력단절자 및 다문화 가정	상시 (약10회)	특수 봉제장비 활용 교육, High End 패턴 샘플교육, CAD/CAM 활용교육 등
글로벌 의류제조 기술교류지원	CISMA 2019 상해 국제 봉제기기 전시회 참관	14개사 내외	동북권 의류제조업체 대표자 및 관리자 14개사 내외로 전시회 참관 참가(숙박비, 항공비 등) 비용 지원
지역 연계 의류제조기업 지원사업	패턴 및 샘플비 지원	50개사 내외	신규 오더 수주 목적의 시제품 개발비 지원 (업체별 최대 4,000천원, 시제품 제작비의 90% 지원)
	신진디자이너 연계 및 상품개발 지원	30인	샘플제작 컨설턴트 운영 및 샘플 제작비 지원, 팝업스토어 개최를 통해 생산 상품 판매 기회 부여

※신규 사업 내용 및 목표는 '지역봉제협회', '이해관계자'와 협의하여 조정 진행 예정임으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임.

마. **사업 관리 및 요구사항**

- ▫ 주간 및 월간 보고서(실적 및 운영 결과) 제출
- ▫ 사업결과물 아카이빙 제작 및 제출
- ▫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보고 및 현황보고 실시
- ▫ 센터 운영 프로그램 기획사항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서울디자인 재단과 협의 후 과업 수행

Ⅲ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

가. 사업수행 지침

1. 과업 준수사항

※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 과업 지시자는 "발주기관"으로, 과업 수행자는 "계약상대자"로 칭한다.

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.

□ 계약상대자는 센터 운영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 관련 논의한다.

□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.

□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
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2. 과업의 효력

□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·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
·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
·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
·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
·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

·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

·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
·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
·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

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, 참여인력 경력,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
-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
·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, 재단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,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, 재단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

나. 착수보고 지침

1. 착수보고 지침

□ 착수보고 시 내용 구체화 및 교육 참가 협력·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.

□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,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및 교육운영 계획을 제시한다.

□ 기획 인력 인건비, 공간 설계 계획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 수립

□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2. 수행환경

□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.

□ 본 사업은 서울의 의류 제조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과 근로환경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.

□ 본 협약서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및 진행한다.

□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제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□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, 협상서,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□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

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- □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.
- □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,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, 작업 추진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당사자에게 있다.
- □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(사진, 데이터, 그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,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위탁업체가 해결하며,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사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.

다. 기타

- □ 본 과업지시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.
- □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,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□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,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□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.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- □ 모든 저작권, 소유권은 발주처(서울디자인재단)에게 있다.